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
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72
----------	-----

2023. 12. 12.(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1월 30일

-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영탁 의원)

-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개정('23.5.9.)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·의결 대상 규정 신설(안 제12조)
 - 일상적 반복적 안건으로 경미한 내용, 재난발생으로 인한 불출석,
 -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한 특별한 사정
-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3조)
 - 원격영상회의 방식(일부 대면)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으며, 원격영상회의 참석도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이 가능함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가. 개정의 필요성

- 「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는 상위법인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운영해 왔음.
- 2023년 5월 9일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

-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·의결 대상 규정을 안 제12조를 신설하였으며,
- 원격영상회의 방식(일부 대면)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으며, 원격영상회의 참석도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안 제13조를 신설하였음.

다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·의결 대상 규정 신설하고,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
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의 수당)”을 “(위원의 수당 등)”으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12조
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서면 심의·의결 대상)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
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일상적·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
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없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
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)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
의는 원격영상회의(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
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
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의 수당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(위원의 수당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서면 심의·의결 대상)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상적·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없는 경우 3.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<p>제13조(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)</p> <p>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원격영상회의(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</p>
<p><신 설></p>	<p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12조</u> ~ <u>제18조</u> (생략)</p>	<p>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4조</u> ~ <u>제20조</u> (현행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2. 16.] [법률 제19023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26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~④ (중략)

④ 그 밖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□ 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3. 11. 10.] [대통령령 제33451호, 2023. 5. 9., 일부개정]

제13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) ① ~④ (생략)

⑤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6조(위원의 수당 등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